

여러분의 유언장에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저 외면해 버리고 만다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쉽게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것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열망, 그것은 타고난 은사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봉사에 바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유언장에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를 포함시키는 일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도울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어가야 할 유업이며,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뉴욕 주의회의 특별법에 준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유언장에 의해 증여된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취득, 수령 및 소유에 관한 사항은 상기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았습니다.

증여나 유증은 여선교회 이사회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결정한 선교 사역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여선교회를 위한 증여나 유증은 특정 프로젝트나 미국내 또는 세계 여러나라의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필요한 곳과 관심분야,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바뀌게 되므로,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어떤 경우 지정하는데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선교회는 유증이나 증여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추천 유증양식

1. 포괄 유증

본인은 475 Riverside Drive, New York, N.Y. 10115에 본부를 둔 뉴욕 비영리 기관인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에 \$_____를 유증한다. 재무담당자로 부터 받은 영수증으로 유언집행인은 상기의 금액을 집행할 수 있다.

가. 유증의 사용처를 미국내나 해외의 사역에 지정하려면, “금액 \$_____” 뒤에 “다른 나라의 선교 사역에 사용” 또는 “미국내의 선교 사역에 사용”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됩니다.

나. 유증의 사용처를 특정한 프로젝트(들)에 지정하려면, “금액 \$_____” 뒤에 프로젝트의 이름을 써서 “000 프로젝트에 사용”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됩니다.

2. 잔여재산 조항

잔여재산을 여선교회에 기부하려면 다음의 문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Residual Clause: 유산의 상속과 세금보고 등을 다 처리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재산)

본인의 소유 또는 유언장에 따라 본인이 처분 내지 지정한, 그 어떤 곳에 있는 동산, 부동산, 개인 소유물 그리고 이들 혼합물 등 본인에게 남아 있는 모든 (또는 _____ 퍼센트) 잔여재산을 475 Riverside Drive, New York, N.Y. 10115에 본부를 둔 뉴욕 비영리 기관인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에 유증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reasurer's Office, Room 1503
United Methodist Women National Office
475 Riverside Drive
New York, NY 10115

3. 추모

증여를 통해 고인을 추모하고 싶은 경우, 다음의 문장을 삽입하십시오.
“ _____ 추모 기부”

4. 기부할 수 있는 유형

현금 또는 예금증서와 같은 현금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자산.

생명보험 - 여선교회를 보험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는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 여러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포함한 부동산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은퇴계정 - 은퇴계정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의 수혜자로 여선교회 또는 다른 자선단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시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는 지정한 자선단체에 비과세로 기부됩니다.

증권 - 증권을 기부할 경우 구입원가가 아닌 시가로 연방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증권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행 계획

여러분의 유언장은 변호사, 파이낸셜 플래너(금융자산관리사), 회계사, 보험중개사 등의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상속계획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상속계획의 일부분으로 잘 작성된 유언장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것입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이 배분되겠지만, 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상속처리가 지연되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비용 부담과 불편을 주게 됩니다. 오늘 유언장을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여선교회를 수혜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 · 소망 · 사랑

무염소 처리 종이 사용

www.umwmissionresources.org
800-305-9857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하십시오. 유언장에
증여 또는 유증에 대한 조항을 넣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신 이후에 작성하십시오. 전문적인
법적 조언 없이 유언장이 작성되어서는 안됩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